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21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24.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5,534,78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4,7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2. 25. 소외 채무자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을 지체약정이율 연 18.9%로 정하여 신용대출하였는데, 채무자는 2024. 5. 9. 현재 5,534,78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채무자는 2024. 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4. 1.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256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채무자와 1988. 7. 28. 혼인하였다가 2000. 9. 8. 협의이혼하였고, 2011. 2. 14. 다시 혼인하였다가 2024. 3. 28.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와 채무자는 2024. 1. 5.경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채무자는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채무를 피고가 전부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혼한다. 채무자는 재산권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채무자는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채무자가 협의이혼신고를 하기 이전인 2024. 1.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한 후 2024. 1. 3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한 후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¹⁾

나.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생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와 피고는 1988. 7. 28. 최초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일부 이혼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2024. 3.경까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별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한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이혼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선택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